

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안전보건관리체제

제15~18조, 제24조, 제75조



안전·보건조치

제38~40조

사업주는 추락, 봉괴, 기계·기구, 전기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**안전보건조치**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.

“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사항은 「**안전보건규칙**」에서 정함”

(다음장 참조)

위험성평가

제36조

사업주·근로자가 스스로 유해·위험 요인을 함께 찾아내어,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합니다.

-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“**최초평가**”
 - 기계·장비 등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“**수시평가**”
 -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는 “**정기평가**”
- * 월·주·일 단위 **상시평가** 활용 가능(위험성평가 고시 제15조)
- “유해·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참여”

안전보건교육

제29~31조

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**TBM**

작업전안전점검

| 구분 | 기초안전보건교육 | 특별교육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 | 건설일용근로자 | 위험작업 일용근로자 |
| 시간 | 4시간 이상(지정기관) | 2시간 이상 |
| 내용 |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등 | 유해·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 |

작업 시작 전 모여서 공구상자(Tool Box) 앞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작업계획 및 안전확인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회의(Meeting)

작업중지

제51~52조

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**사업주는 “작업을 중지”** 하여야 하며, **근로자는 “작업을 중지하고 대피”** 할 수 있습니다. *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

“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우선 작업중지”



도급인(원청)의 의무

제63~64조

도급인(원청)은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(하청)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안전보건협약체

도급인, 수급인
<원하청 소장, 월 1회>

작업시작 시간, 연락 및 대피 방법, 위험성평가 등 협의

정보제공

작업 주의사항 및 안전보건수칙 제공

순회점검

도급인
<원청소장, 격일 1회>

현장을 순회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

교육지원

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

합동안전보건점검

도급인, 관계수급인, 근로자
<원하청 소장 + 근로자, 격월 1회>

현장을 순회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점검

현재작업 관리

관계수급인 간 작업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

기계·기구 안전조치

제38조, 제76조, 제81조, 제84조, 제93조

굴착기, 고소작업대, 이동식크레인,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 기계·장비 사용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작업계획서 작성

안전보건규칙 제38조

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여 **작업계획서**를 작성·준수하고, 근로자에게 주지

대여 시 조치

임대인은 기계의 보수·수리·점검내역, 부품 교환 이력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

임차인은 운전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고, 기계 작동 및 작업방법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

안전인증 및 안전검사

고소작업대, 곤돌라 등 사용 시 안전인증

여부 확인 및 주기별 **안전검사** 실시

도급인의 안전조치

타워크레인, 향티기, 건설용리프트 조립·해체 시 작업자의 적정 자격여부, 기계기구 등의 결함여부 등을 확인하고, 작업방법 및 절차를 수립

화학물질 재해예방

제114~115조

유해위험물질 사용 시 **물질안전보전자료(MSDS)**를 게시하고 교육하여야 하며, 화학물질을 소분하는 경우 각 용기마다 **경고표시**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

건강장애 예방

제125조, 제128의2조, 제130조

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.

작업환경측정

소음, 분진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측정·평가

특수건강진단

유해인자 노출 대상 업무의 근로자 배치 적합성을 평가

휴게시설 설치

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마련

◦ 안전모·안전대 착용! 작업 전 안전점검(TBM)! 생명을 지립니다 ◦

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

사망사고 다발 TOP 12

건축 구조물

안전난간 & 작업발판

추락방호망

안전대 부착설비


지붕 4년간 169명 사망

- ▶ 채광창 덮개 설치
- ▶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


단부·개구부 4년간 157명 사망

- ▶ (단부)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
- ▶ (개구부) 덮개 설치 및 고정


비계 4년간 98명 사망

- ▶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
- ▶ 작업발판 고정 (뒤집힘 방지)


사다리 4년간 80명 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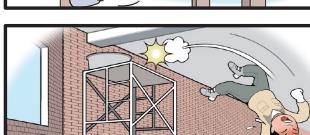
- ▶ 말비계·이동식비계 등으로 대체
- ▶ 2인 1조 작업, 아웃트리거 설치


철골 4년간 80명 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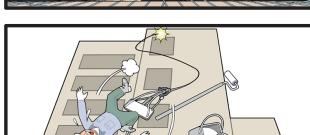
- ▶ 철골(보) 조립 전 지상에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
- ▶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


거푸집·동바리 4년간 55명 사망

- ▶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·준수
- ▶ 높이 4.2m 이상: 시스템 동바리 사용


이동식비계 4년간 49명 사망

- ▶ 최상단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
- ▶ 구름방지장치, 아웃트리거 설치
- ▶ 작업자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


달비계 4년간 48명 사망

- ▶ 로프, 구명줄 별개의 고정점에 묶음
- ▶ 로프·벽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

기계 장비

지반상태 확인(전도방지)

작업반경 출입통제(접촉방지)

유도자 배치 및 신호


굴착기 4년간 85명 사망

- ▶ 작업전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
- ▶ 운전원 좌석안전띠 착용
- ▶ 작업장치 안전핀 체결


고소작업대 4년간 78명 사망

- ▶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착용
- ▶ 아웃트리거, 브레이크 설치
- ▶ (시저형) 과상승방지장치 설치


트럭 4년간 75명 사망

- ▶ 차량 및 작업자 이동통로 구분
- ▶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분리


이동식크레인 4년간 43명 사망

- ▶ 정격하중 준수 / 흙해지장치 사용
- ▶ 아웃트리거 설치

대형사고 유발 TOP 6

불괴 화재

변위 계측 값 모니터링

기계 조립·해체방법 준수

소화기 & 불티비산방지덮개


굴착면 4년간 44명 사망

- ▶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
- ▶ 비닐 덮개 등 벗물 침투방지


흙막이·지보공 4년간 15명 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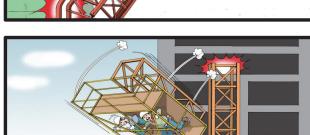
- ▶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·준수
- ▶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


타워크레인 4년간 18명 사망

- ▶ 설치·해체·인상 작업계획 수립·준수
- ▶ 정격하중 준수 / 흙해지장치 사용


향타기 4년간 11명 사망

- ▶ 설치 지반 깔판·깔목 설치
- ▶ 작업반경 출입금지


건설용리프트 4년간 8명 사망

- ▶ 설치·해체·인상 작업계획 수립·준수
- ▶ 리프트 출입문 임의개방 금지


용접장치 4년간 48명 사망

- ▶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
- ▶ 불티비산방지덮개, 소화기 비치

